

제도 · 법제와 실내건축 업무 영역 실태

이창노 / 경성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

1. 서론

한국의 실내 디자인사를 구분할 때 해방이후 6.25를 치루고 난 후 1950년대까지를 암흑기라고 한다. 그 후 1960년대를 기점으로 청년작가들이 전시회 및 지상을 통해 활동하면서 실내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요소, 즉 상업공간이나 전시공간 등의 수요를 서서히 증가시켰고 본격적으로 실내디자인의 태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78년7월28일 39명의 창립동인으로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KOSID)'가 창립되었으며, 1988년, 대학의 실내 디자인학과 신설은 전문직으로서 우수인력양성과 학술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였고, 또한 '86아시안 게임, '88서울 올림픽 등의 국제 행사 유치를 통해서 한층 더 발전하게 되었다.

1991년 3월30일 '한국실내디자인학회(KIID)'의 발족과 더불어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KOSID), 1991년 8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의장공사협의회(ICC)를 포함하여 3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질적, 양적 균형을 갖추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1990년대는 인테리어디자인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시기로서 '92년 대전 EXPO개최와 국제시장개방에 따른 준비,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인 의장기사자격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인테리어디자인 분야를 제도권 안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아시아 태평양 스페이스 디자이너협회(APSDA)가 창립되었으며, 세계실내디자이너연맹(IFDI)정회원국으로 가입, 회장국으로서의 활발한 활동 등, 국제적 회의에 적극 참가하면서 실내디자인 분야에서의 국제적 조류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다.

2. 실내건축 업무 영역의 제도 및 법제적 상황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94년 1월부터 건축물 해체, 토공사, 주택보급 건설업의 상당부분에서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하기로 했고, 2000년 1월부터는 WTO체제에 의거 실내장식 공사업, 내장목공사업 등 건설업 관련 전문업종에 걸쳐 자유화가 실시됨으로써 선진국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외국업체들과 힘겨운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어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실내건축의 업역은 건설산업기술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유일한 법적 해석이다. 1999년4월 15일에 개정된 건설산업기술법의 제8조 건설업의 종류에서 실내건축은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었다. 이 법령에는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련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실내건축의 업무내용은 전문건설업의 1.실내건축업-[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인테리어공사 및 목재를 가공하여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로 기술되고 건설공사의 예시에서는 [실내외장공사(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는 제외),목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등]으로 표기 되어 있다. 상기 내용은 2000년 4월 18일 종전 규정에 의한 건설업-외장공사업이 이령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부칙이 변경되어 2001년 8월25일에 건설업의 업종간 업종별 업무내용이 개정되어 시행되어 있다.

2003년 8월 21일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명기된 전문건설업의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이다. 이 법령에는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이 조정되면서 '목재창호공사'가 실내건축공사업에 추가되어, 목재를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事も 실내건축업의 업무 내용에 포함되었다.

2.1. 제도 및 법적 상황하의 실내건축분야 업무영역

<표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개정 '98.12.31, '99.8.6, '01.8.25, '02.9.18, '03.8.21, 08.8 예정>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일반 건설업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5. 조경공사업		
	1. 실내건축 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석공사) 및 제5호(도장공사)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전문 건설업	2. 토공사업 3. 미장·방수·조적 공사업 4. 석공사업 5. 도장공사업 29. 시설물유지관리법		

현재 분류되어 있는 건설업의 종류에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되어 있으며, 실내건축공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전문건설업은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 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행해지고 있는 많은 공사업이 함께 시행되고 있었는데, 2008년 1월1일부터 개정된 건설산업기술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제2항, 제3항에 의거 강력하게 규제되었다.

2.2. 현재 실내건축분야의 문제점

(2000년 4월 18일 종전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장공사업이 건설산업기술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부칙이 변경됨. 따라서 지금부터는 실내건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각종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법령의 적용대상 및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다. 또한 업역에 관한 표준산업분류는 분류에 따라 법령이나 적용세율, 정부의 지원여부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건축업의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못해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실내건축업은 전문화와 특수성으로 인해 건축업과 많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개념의 건축업 규정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실내건축업은 법제도 및 업계의 관행뿐 아니라 명백한 정의 및 업역 구분으로 독립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실내건축업이 건축업에서 적용되는 모든 제도와 관행에 따라 적용되어 왔기 때문이며, 실내건축 업역에 관한 정의 및 논리의 부재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제도상으로는 설계분야에 대한 실내건축(실내디자이너)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으며, 관청, 공공기관,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실내건축시공분야도 건설산업기술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건축분야의 일부분으로 시행되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3. 국내.외 실내건축분야의 산업분류

3.1. 국내 실내건축분야의 산업분류

<표 2> 국내 실내건축분야의 산업분류

3.2. 국외 실내건축분야의 산업분류

<표 3> 국외 실내건축분야의 산업분류: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4. 국내 디자인분야별 제도 및 법적 상황

국내 디자인 산업에 관련된 법규는 1999년 2월 5일 개정된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취지의 디자인 진흥법이 유일하다. 디자인 진흥법에서 정한 디자인산업의 분류는 [디자인진흥법 제2조에서 “산업디자인”이라 함은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리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고,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 등을 포함 한다.] 라고 정의하여 현재까지 통용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분류된 디자인산업은 점차적으로 각기 다른 법과 제도에 의해 재해석되어 지고 나뉘어져 디자인산업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4.1. 제품디자인분야

제품디자인분야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5.12.16 산업자원부령 제314호]제9조 제1항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기준에서 [제품디자인분야]로 분명하게 규정되어져 있다.

그러나 시설물설치 및 설계는 과학기술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7428호에 의해 “엔지니어링활동주체면허기준에 (과학기술부법)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면허를 가진 자가 제품디자인영역을 행할 수 있게 하였고,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 표에서 응용이학부분에 제품디자인 자격기준을 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디자이너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졌다.

결과적으로 설계 및 기획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면허보유업체가 법적으로 통용되어지며 결과물은 제품제작으로 분류하였고, 시공 또한 그에 맞는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가(철구조물, 토목, 석공 등의 면허)시행토록 되어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4.2. 환경디자인분야

실내디자인분야는 업무 영역을 부득이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5.12.16 산업자원부령 제314호]제9조 제1항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기준에서 [환경디자인분야]와 연계시켜 볼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여 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 1992년에 신설된 의장공사 면허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전문건설업(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으로 분류되어 졌고, 현재까지도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시공에 관한 전문건설업 면허제도만 부여받음으로써 실내건축설계(실내디자인)의 근간인 설계권은 자연히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제19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가 권리와 의무를 대신하게 되어졌다. 시공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설계경기지침에 의해 금액입찰 또는 건설설계경기지침에 의한 설계경기 제도로 시행되어지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4.3. 포장디자인 및 시각디자인분야

상기 분야에 대한 현황분석은 본 주제의 내용과 관련이 적으므로 제외.

5. 분석의 종합 및 대응책

5.1. 분석의 종합

<표 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5.2. 대응책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와 제43조의 2에 규정되어져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분석해보면 아래 내용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해결방안으로 연구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의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96.12.31, 2003.12.11>

제43조의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 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6. 맺음말

현행의 제도·법제적 상황 하에서 도출된 산업디자인(디자인 전문회사) 및 실내건축업무 영역의 실태조사 결과,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음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여 년간 많은 발전과 업적을 이룬 실내건축분야(인테리어디자인, 실내디자인 등)는 전문화와 특수성 등으로 인해 건축업과 많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개념의 건축업 규정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실내건축업은 법제도 및 업계의 관행뿐 아니라 명백한 정의 및 업역 구분으로 독립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실내건축업이 건축업에서 적용되는 모든 제도와 관행에 따라 적용되어 왔기 때문이므로, 향후에는 실내건축 업역에 관한 당위성 있는 정의 및 명확한 논리를 적용한 관련법 개정을 실현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1. Korean Society of Interior Designers 1979-1994,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1994.
2. 이승룡 외 4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라이선스 제도에 관한 연구, (사)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1995.
3. 박찬일 외 4인, 제도와 세계화, 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 61호, 2005.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내건축업의 분류기준 개정작업을 위한 자료조사 연구, (사)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6.
5. 건축사법
6. 건설산업기술법
7. 엔지니어링법-과학기술부
8. 디자인진흥법
9.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제43조2